

춘천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318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31895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3195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3. 11. 30.

판결선고 2023. 12. 21.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3195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21. 11. 1. 접수 제496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C과 피고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매매의 실제 계약체결일은 2018. 4. 28.이고, 실거래 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해 2021. 10. 1.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매매의 실제 계약체결일이 2018. 4. 28.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의 실제 계약체결일이 2018. 4. 28.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이보라, 판사 고병용

별지